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3. 6.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8년 2월 19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8년 2월 22일

라. 상정일자 :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위원회(2018. 3.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춘은)

가. 제안이유

- 도림유수지 체육공원 내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등이 신규 건립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정비하고, 사용료 징수 근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체육시설 현황 정비(안 제8조, 별표1, 별표2)
-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조항 규정(안 제9조, 별표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목)

- 이 개정 조례안은 도림유수지 체육공원 내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등의 신규 건립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정비하고 사용료 징수근거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원활한 체육시설 운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8조, 별표1, 별표2에서 체육시설 현황을 정비하였으며,
 - 안 제9조, 별표3에서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세부 규정하여 명확히 하였음.
- 검토결과, 우리구 체육시설이 확충 정비되고, 사용료 및 감면 조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요구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37 호
----------	---------

제출연월일 : 2018.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도림유수지 체육공원 내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과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신규 건립에 따라 체육시설 현황을 정비하고,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 및 사용료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현황 정비(안 제8조, 별표1, 별표2)

나.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조항 규정(안 제9조,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3)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18.1.18. ~ 2.5. / 18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체육시설**을”을 “**스포츠센터**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대림운동장**”을 “**그 밖의 체육시설**”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별표 3의 시설**”을 “**별표 3의 대림운동장 축구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표 축구선수 및 테니스 선수가**”를 “**대표선수가 해당종목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사용료**”를 “**개인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축구연합회 및 테니스연합회**”를 “**축구협회 및 테니스협회**”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제3조제3항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주요 시설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영등포구 신풍로 1(신길동)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9,169.36㎡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다목적체육실, 유아체육시설, 문화강좌실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영등포구 국회대로 615(당산동4가)	지하 3층/지상 5층 연면적 6,674.19㎡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다목적체육실, 유아체육시설, 문화강좌실
영등포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영등포구 도신로 15길 5 (도림동)	지상3층 연면적 2,990.73㎡	배드민턴 등 다목적체육실
영등포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영등포구 도신로15길 11 (도림동)	지상3층 연면적 492.3㎡	실외·실내 압벽장, 프로그램실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영등포구 가마산로31길 16(대림동)	16,498㎡	배드민턴장 2면 농구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축구장 1면 테니스장 3면
양평동 체련장	양평동5가 128-1	1,628㎡	농구장 1면
대방천 체련장	신길3동 376	4,243㎡	게이트볼장 1면
당산2동 배드민턴장	당산동6가 91-34	564㎡	배드민턴장 4면
양평2동 배드민턴장	양평동5가 128	240㎡	배드민턴장 3면
도림동 배드민턴장	도림동 265	320㎡	배드민턴장 4면
안양천 체육시설	신정교~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문래동)	30,508㎡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농구장 1면 족구장 1면 축구장 3면
	오목교~목동교구역 둔치체육시설(양평1동)	5,300㎡	게이트볼장 7면 축구장 4면
	양평교~양화교구역 둔치체육시설(양평2동)	17,448㎡	족구장 1면 축구장 3면 게이트볼장 2면
도림천 체육시설	둔치체육시설(도림동)	540㎡	농구장 1면
유수지 체육시설	도림동 유수지	14,000㎡	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보조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구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
	대림3동 유수지	16,128㎡	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보조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구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
	신길 유수지	3,679㎡	조깅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구장 1면

영등포스포츠센터 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 개인사용료

(단위 : 원)

구분 \ 사용료	대 상	기본사용료 (1회) 상한	월 사용료 (1시간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 인	4,000	16,000	32,000	48,000	56,000	64,000	72,000
	청소년	3,000	12,000	24,000	36,000	42,000	48,000	56,000
	어린이	2,500	10,000	20,000	30,000	35,000	40,000	45,000
골프 연습장	성 인	6,000	월 120,000					
	청소년(어린이)	5,000	월 100,000					
체력 단련장	성 인	2,500	월 50,000					
	청소년(어린이)	2,000	월 40,000					
체육관	성 인	3,000						
	청소년	2,000						
	어린이	1,500						
비 고	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 2. 수영장, 골프연습장 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3.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5.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3급은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라.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마.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차츰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7.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스포츠센터 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							

○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분 \ 사용료	대 상	대관료	비 고
체육관	체육경기	150,000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기타	300,000	
수영장	체육경기	280,000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2,0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기타	560,000	- 동절기(11월~2월) 수영장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비 고	1.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한다. 가. 토·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2.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영등포구체육회 소속 종목별 협회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단, 협회별 연 1회로 한정한다) 4.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평일			공휴일(토요일 포함)			비고
			성인	청소년	어린이	성인	청소년	어린이	
대림 운동장	개인 사용료	테니스장	8,000			10,400			1면 기준(2시간)
	전용 사용료	축구장	40,000			52,000			1팀 기준(2시간)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개인 사용료	일일입장	3,000	2,000	1,500	3,000	2,000	1,500	평일 기준(3시간) 주말 기준(2시간)
		월 정기	44,000	27,500	22,000	일일 입장 별도 구매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	130,000			170,000			기본 기준(2시간)
		체육경기 외 행사	330,000			430,000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	개인 사용료	일일입장	3,000	2,000	1,500	4,000	2,500	2,000	실내/실외 이용
		월 정기	성인 40,000, 청소년 30,000, 어린이 25,000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	25,000			30,000			1루트 기준(2시간) 개인사용료 별도
비고	1.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 제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3. 대림운동장 운영시간은 11월~2월은 07:00~18:00, 3월~10월은 06:00~19:00 까지로 한다. 4.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시 전용사용료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영등포구체육회 소속 종목별 협회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단, 협회별 연 1회로 한정한다) 5. 사용료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3급은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라.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마.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자녀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6.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한해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7.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한다.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이 포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 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삭제	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u>체육시설</u> 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u>스포츠센터</u> 를----- ----- ----- -----.
③ <u>대림운동장</u>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u>그 밖의 체육시설</u>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의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감면)① ----- ----- -----.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5.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여성축구교실,청소년풋살교실,어린이축구교실 등에 등록한 자가 별표 3의 <u>시설</u> 을 사용할 때	5.----- ----- ----- <u>대림운동장 축구장</u> -----
6. 영등포구 <u>대표 축구선수 및 테니스 선수가</u> 연습을 위하여 별표 3의 시설을 사용할 때	6.----- <u>대표선수가 해당 종목의</u> -----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서 정한 <u>사용료</u> 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 ---- <u>제8조제2항 및 제3항</u> ----- <u>개인 사용료</u>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서 정한 대림운동장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영등포구 <u>축구연합회 및 테니스 연합회</u> 에 등록된 단체의 사용료	2. ----- <u>축구협회 및 테니스 협회</u> -----

현행				개정안			
[별표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제3조 관련)				[별표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제3조 관련)			
시설명	위치	규모	주요시설	시설명	위치	규모	주요시설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영등포구 신봉로 1(신길동)	지하 2층 / 지상 3층 연면적 9,131㎡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유아체육시설, 다목적체육실, 문화강좌실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영등포구 신봉로 1(신길동)	지하 2층 / 지상 3층 연면적 9,169.36㎡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유아체육시설, 다목적체육실, 문화강좌실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영등포구 국회대로 615(당산동4가)	지하 3층 / 지상 5층 연면적 6,674㎡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유아체육시설, 다목적체육실, 문화강좌실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영등포구 국회대로 615(당산동4가)	지하 3층 / 지상 5층 연면적 6,674.19㎡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유아체육시설, 다목적체육실, 문화강좌실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영등포구 가마산로31길 16(대림동)	16,498㎡	배드민턴장 2면 농구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축구장 1면 테니스장 3면	영등포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영등포구 도신로 15길 5 (도림동)	지상3층 연면적 2,990.73㎡	배드민턴 등 다목적체육실
양평동체련장	양평동5가 128-1	1,628㎡	농구장 1면	영등포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	영등포구 도신로 15길 11(도림동)	지상3층 연면적 492.3㎡	실외·실내암벽장, 프로그램실
대방천체련장	신길3동 376	4,243㎡	게이트볼장 1면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영등포구 가마산로31길 16(대림동)	16,498㎡	배드민턴장 2면 농구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축구장 1면 테니스장 3면
당산2동 배드민턴장	당산동6가 91-34	564㎡	배드민턴장 4면	양평동체련장	양평동5가 128-1	1,628㎡	농구장 1면
양평2동 배드민턴장	양평동5가 128	240㎡	배드민턴장 3면	대방천체련장	신길3동 376	4,243㎡	게이트볼장 1면
도림동 배드민턴장	도림동 265	320㎡	배드민턴장 4면	당산2동 배드민턴장	당산동6가 91-34	564㎡	배드민턴장 4면
인양천 체육시설	신정교~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문래동)	30,508㎡	인라인스케이트장1면 농구장 1면 축구장 1면 축구장 3면	양평2동 배드민턴장	양평동5가 128	240㎡	배드민턴장 3면
	오목교~목동교구역 둔치체육시설(양평1동)	5,300㎡	게이트볼장 7면 축구장 2면	도림동 배드민턴장	도림동 265	320㎡	배드민턴장 4면
	양평교~양화교구역 둔치체육시설(양평2동)	17,448㎡	축구장 1면 축구장 2면 게이트볼장 1면	인양천 체육시설	신정교~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문래동)	30,508㎡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농구장 1면 축구장 1면 축구장 3면
도림천 체육시설	둔치체육시설(도림동)	540㎡	농구장 1면		오목교~목동교구역 둔치체육시설(양평1동)	5,300㎡	게이트볼장 7면 축구장 4면
유수지 체육시설	도림동 유수지	14,000㎡	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 보조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구장 1면 배구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		양평교~양화교구역 둔치체육시설(양평2동)	17,448㎡	축구장 1면 축구장 3면 게이트볼장 2면
	대림3동 유수지	16,128㎡	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보조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구장 1면 배구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	도림천 체육시설	둔치체육시설(도림동)	540㎡	농구장 1면
	신길 유수지	3,679㎡	조깅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구장 1면	유수지 체육시설	도림동 유수지	14,000㎡	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 보조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구장 1면 배구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
					대림3동 유수지	16,128㎡	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보조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구장 1면 배구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
					신길 유수지	3,679㎡	조깅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구장 1면

현 행

[별표 2]

영등포스포츠센터 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 개인사용료

(단위 : 원)

사용료 구 분	대 상	기본 사용료 (1회) 상한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상한 (1시간 기준)					
			주1 회	주2 회	주3 회	주4 회	주5 회	주6 회
수영장	성 인	4,000	16,000	32,000	48,000	56,000	64,000	72,000
	청소년	3,000	12,000	24,000	36,000	42,000	48,000	56,000
	어린이	2,500	10,000	20,000	30,000	35,000	40,000	45,000
골프 연습장	성 인	6,000	월 120,000					
	청소년 (어린이)	5,000	월 100,000					
체력 단련장	성 인	2,500	월 50,000					
	청소년 (어린이)	2,000	월 40,000					
체육관	성 인	3,000						
	청소년	2,000						
	어린이	1,500						
비 고	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 2. 수영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3.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5.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산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 을 감면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용료 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3급은 장애인과 동반하 는 보호자 1인 포함)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라.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마.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18세 이하의 자 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자녀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7.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							

개 정 안

[별표 2]

영등포스포츠센터 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 개인사용료

(단위 : 원)

사용료 구 분	대 상	기본 사용료 (1회) 상한	월 사용료(1시간 기준)					
			주1 회	주2 회	주3 회	주4 회	주5 회	주6 회
수영장	성 인	4,000	16,000	32,000	48,000	56,000	64,000	72,000
	청소년	3,000	12,000	24,000	36,000	42,000	48,000	56,000
	어린이	2,500	10,000	20,000	30,000	35,000	40,000	45,000
골프 연습장	성 인	6,000	월 120,000					
	청소년 (어린이)	5,000	월 100,000					
체력 단련장	성 인	2,500	월 50,000					
	청소년 (어린이)	2,000	월 40,000					
체육관	성 인	3,000						
	청소년	2,000						
	어린이	1,500						
비 고	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 2.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3.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5.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 을 감면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용료 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3급은 장애인과 동반하 는 보호자 1인 포함)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라.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마.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8세 이하의 자 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자녀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7.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스포츠센터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							

현 행

○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사용료 구분	대 상	대관료	비 고
체육관	체육 경기	150,000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을 추가하여 징수 한다.
	기 타	300,000	
수영장	체육 경기	280,000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2,000원을 추가하여 징수 한다.
	기 타	560,000	- 동절기(11월~2월) 수영장 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비 고	1.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한다. 가. 토·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30 이내에서 가산한다. 2.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영등포스포츠센터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단체 주관행사 등 의 개최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단, 단체별 연 1회로 한정한다) 4.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 로 한다.		

개 정 안

○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사용료 구분	대 상	대관료	비 고
체육관	체육 경기	150,000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을 추가하여 징수 한다.
	기 타	300,000	
수영장	체육 경기	280,000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2,000원을 추가하여 징수 한다.
	기 타	560,000	- 동절기(11월~2월) 수영장 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비 고	1.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한다. 가. 토·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30 이내에서 가산한다. 2.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영등포스포츠센터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영등포구체육회 소속 종목별 협회 주관행사 등 의 개최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단, 협회별 연 1회로 한정한다) 4.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 로 한다.		

현행

[별표 3]

대림운동장 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평 일	공휴일 (토요일포함)	운 영 시 간	비 고
대림운동장 축구장	40,000	52,000	11월 ~ 2월 07:00~18:00	1팀 기준 (2시간)
			3월 ~ 10월 06:00~19:00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8,000	10,400	06:00~22:00	1면 기준 (2시간)
비 고	-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 제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할 수 있다. 가. 토·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 대림운동장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단체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단체별 년 1회로 한정한다) -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개인사용료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3급은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평일			공휴일 (토요일 포함)			비고	
		성인	청소년	어린이	성인	청소년	어린이		
대림 운동장	개인 사용료	테니스장	8,000			10,400			1면 기준 (2시간)
	전용 사용료	축구장	40,000			52,000			1팀 기준 (2시간)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개인 사용료	일일 입장	3,000	2,000	1,500	3,000	2,000	1,500	평일 기준 (3시간) 주말 기준 (2시간)
		월 장기	44,000	27,500	22,000	일일 입장 구매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	130,000			170,000			기본 기준 (2시간)
		체육경기 외 행사	330,000			430,000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	개인 사용료	일일 입장	3,000	2,000	1,500	4,000	2,500	2,000	실내/실외 이용
		월 장기	성인 40,000, 어린이 25,000 청소년 30,000.						
	전용 사용료	체육 경기	25,000			30,000			1루트 기준(2시간) 개인사용료 별도
비고	1.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 제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비고	3. 대림운동장 운영시간은 11월~2월은 07:00~18:00, 3월~10월은 06:00~19:00 까지로 한다.								
	4.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시 전용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비고	가.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영등포구체육회 소속 종목별 협회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단, 협회별 연 1회로 한정한다)								
비고	5. 사용료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비고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3급은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비고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라. 「노인복지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비고	마.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자녀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6.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한해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비고	7.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한다.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비고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 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할 수 있다.								